

# 주취자 보호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

## (임호선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14646 |
|----------|-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27.

발 의 자 : 임호선 · 김문수 · 정준호  
이상식 · 김영환 · 문대림  
임미애 · 안도걸 · 정춘생  
김주영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

코로나19 엔데믹(Endemic) 이후 주취자 관련 112신고가 급증하여 2024년 기준 약 97만 건으로 전체 신고의 5.1%를 차지하며, 주취자 대응에 경찰력 소모가 증가하고 있음.

현행 「경찰관 직무집행법」은 전문성이 부족한 경찰관에게 주취자 응급구호 판단을 전적으로 맡기고 있어, 발견·보호·치료 등 복합적 대응이 필요한 주취자 보호조치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경찰·의료·복지 분야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, 주취자에 대한 긴급구호 절차, 보호기관 운영, 인권 보호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주취자의 보호 및 안전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.

## 주요내용

- 가. 이 법은 주취자 보호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“주취자”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 또는 의사능력이 저하되어 심신장애 상태에 이르렀거나 이르게 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는 등 용어를 정의함(안 제2조).
- 다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고 주취자의 보호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며, 주취자의 보호 및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이 전국적으로 균형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(안 제3조).
- 라. 경찰관은 도로, 공원 등 공공장소, 교통수단 등에서 주취자에 대해 언동 등 신체·정신 상태, 주변 상황, 119구조·구급대원 등의 평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응급구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법에 따른 주취자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의 장에게 긴급구호를 요청할 수 있음(안 제8조).
- 마. 경찰관 및 구조·구급대원은 주취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주취자의 가족등에게 연락을 하기 위하여 해당 주취자의 사진을 촬영하거나 지문을 채취하거나 주취자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등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음(안 제9조).
- 바. 경찰관은 주취자에 대하여 긴급구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주취자의

가족등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, 지체 없이 그 조치 내용을 소속 경찰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함(안 제10조).

사. 긴급구호 조치의 기간을 그 필요성이 해소되기까지 최소한의 시간으로 한정하고, 최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, 주취자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의 장은 예외적으로 주취자의 생명·신체·재산에 중대한 위해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취자 또는 주취자의 가족등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긴급구호 조치를 하거나, 주취자를 주취자 응급의료기관 또는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에 머물게 할 수 없도록 함(안 제11조).

아. 경찰관은 긴급구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주취자의 자해 방지나 소란·난동행위의 제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적절한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있으며, 보호장구의 필요성이 사라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장구의 사용을 중단하여야 함(안 제12조).

자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취자에 대한 긴급구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을 설치 또는 지정·운영할 수 있고, 필요한 경우 주취자 공공구호기관 설치 또는 운영 업무를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(안 제13조).

차.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주취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의무를 부여함(안 제15조).

카. 시·도지사는 주취자에 대한 응급처치 등 의료지원의 지역별 거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지역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주취자에 대한 응급처치 등 의료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응급의료기관, 보건소 또는 보건의료원 중 지역 주취자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(안 제16조).

타. 경찰관은 긴급구호 조치를 받는 주취자가 알코올 중독 증상이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주취자의 정보를 당사자 또는 그 가족등의 동의를 받아 관할 구역 내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의3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음(안 제17조).

파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의 설치, 지정·운영 등과 주취자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(안 제19조).

하.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의 장은 그 시설 등을 이용하는 주취자로부터 긴급구호 조치에 소요된 비용과 시설 이용료를 부과·징수할 수 있음(안 제20조).

## 주취자 보호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주취자 보호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주취자”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 또는 의사능력이 저하되어 자신 또는 심신장애 상태에 이르렀거나 이르게 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.
2. “주취자 응급의료기관”이란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및 지역 주취자 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.
3. “주취자 공공구호기관”이란 제13조에 따라 설치되는 주취자에 대한 일시 보호 등 긴급구호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.
4. “주취자 공공구호기관 종사자”란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에서 주취자에 대한 긴급구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5. “보호장구”란 주취자의 자해 방지나 소란·난동행위의 제지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머리보호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구를 말한다.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

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고 주취자의 보호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취자의 보호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한 지원사업이 전국적으로 균형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역할) ① 경찰공무원은 주취자를 보호하고 필요한 경우 제지할 수 있다.

② 소방공무원은 주취자를 주취자 공공구호기관 또는 보건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.

제5조(인권의 존중)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 주취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.

제6조(주취자 금지행위) 누구든지 술에 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질서 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공공장소에서 고성방가, 욕설, 폭언 또는 타인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행위
2. 공공시설, 공공기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키는 행위
3. 경찰·소방공무원의 정당한 보호조치와 제지를 불응하는 행위
4. 도로·철도 등에서 차량통행이나 시민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

제7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경찰관 직무집행법」, 「사회복지사업법」,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8조(주취자 보호조치 등)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주취자에 대하여 언동 등 상태, 주변 상황, 119구급대원 등의 평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응급구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의 장에게 긴급구호를 요청할 수 있다. 다만, 주취자의 가족, 친지, 그 밖의 연고자(이하 “가족등”이라 한다)에게 연락하여 주취자를 즉시 가족등에게 인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1. 도로, 공원, 광장, 역사 및 그 밖의 공공장소
2. 기차, 전철, 버스, 선박, 항공기 및 그 밖의 공공 교통수단
3. 병·의원, 음식점 등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

② 제1항에 따라 긴급구호를 요청할 때에는 경찰관 또는 119구급대원은 주취자 공공구호기관 또는 보건의료기관까지 주취자를 이송한다.

③ 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주취자에 대하여 언동 등 상태, 주변 상황, 119구급대원 등의 평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응급처치 또는 진료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제16조에 따른 지역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 주취자 응급의료기관 등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긴급구호를 요청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라 긴급구호를 요청할 때에는 119구급대원은 보건의

료기관까지 주취자를 이송한다.

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긴급구호 요청을 받은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의 장 또는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의 장 또는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.

⑥ 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주취자가 자해를 기도하거나 거칠고 위협적인 언동으로 소란·난동행위를 하는 등 그 행위로 인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. 다만,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가 계속되어 그 위험이 지속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주취자를 경찰서·지구대·파출소 또는 출장소(이하 “경찰관서”라 한다)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9조(신원 정보 수집 및 이용) ① 경찰관 및 구조·구급대원은 주취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주취자의 가족등에게 연락을 하기 위하여 해당 주취자의 소지품을 검사하거나, 주취자의 사진을 촬영하거나 지문을 채취하는 등 신원 확인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다.

② 경찰관 및 구조·구급대원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주취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주취자의 가족등에게 연락을 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,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

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주취자의 신원 확인을 위한 방법·절차, 주취자 가족등과 연락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신원 정보 등의 파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0조(긴급구호 조치의 통지 및 보고) ① 경찰관은 주취자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긴급구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주취자의 가족등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경찰관은 주취자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긴급구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조치 내용을 소속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찰서장은 그 내용을 분기별로 시·도경찰청장과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 따른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통지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제11조(긴급구호 조치기간 등) ① 제8조에 따른 긴급구호 조치를 하는 기간은 그 필요성이 해소되기까지 최소한의 시간으로 한정하며, 최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② 주취자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의 장은 주취자 또는 주취자의 가족등[주취자의 의사(意思)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]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긴급구호 조치를 하거

나, 주취자를 주취자 응급의료기관 또는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에 머물게 할 수 없다. 다만, 주취자의 언동 등 신체·정신상태,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필요한 긴급구호 조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·신체·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취자에 대한 긴급구호 조치 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주취자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의 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주취자에 대한 긴급구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12조(보호장구의 사용 등) ① 경찰관은 제8조에 따른 긴급구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주취자의 자해 방지나 소란·난동행위의 제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적절한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.

② 경찰관은 주취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사용된 보호장구의 필요성이 사라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장구의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.

③ 보호장구의 사용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3조(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의 설치 등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취자에 대한 긴급구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취자 공공구호

기관을 설치 또는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주취자 구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취자 공공구호기관 설치 또는 운영 업무를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의 지역별 설치·지정·운영기준, 방법, 절차, 업무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4조(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의 종사자) ①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에는 필요한 전문인력을 포함한 종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.

②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의 종사자의 직종과 수, 그 자격 및 배치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제15조(인권침해 예방교육) ①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주취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주취자 인권침해 예방교육 실시 대상·주기·방법·내용 및 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6조(주취자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등) ① 시·도지사는 주취자에 대한 응급처치 등 의료지원의 지역별 거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지역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.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주취자에 대한 응급처치 등 의료지원 업

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에 따른 지역응급의료기관, 「지역보건법」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또는 보건의료원 중 지역 주취자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.

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지역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 주취자 응급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2.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
3.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역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및 지역 주취자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·방법, 절차와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7조(알코올 중독자 등에 대한 조치) ① 경찰관은 제8조에 따른 긴급구호 조치를 받는 주취자가 알코올 중독 증상이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주취자의 정보를 관할 구역 내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의3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주취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그 가족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범위, 절차,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8조(지도·감독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의 업무를 지도·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의 장에게 그 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시설의 운영상황과 장부, 그 밖의 서류를 조사·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조사·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조사·검사의 기간, 범위, 조사·검사담당자, 조사·검사의 근거 법령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
제19조(비용의 지원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의 설치, 지정·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
2. 주취자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

제20조(비용의 부과·징수)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의 장은 그 시설 등을 이용하는 주취자로부터 긴급구호 조치에 소요된 비용과 시설 이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

제21조(비밀누설의 금지)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22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② 이 법에 따른 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·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③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23조(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) 제13조제2항 또는 제22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제24조(벌칙) ① 제2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② 정당한 이유 없이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, 서류제출 또는 조사·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·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

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제25조(양벌규정)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26조(과태료)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취자에 대한 응급의료 또는 응급조치를 거부하는 주취자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② 정당한 이유 없이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③ 주취자 공공구호기관의 장 또는 보건의료기관의 장이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주취자의 보호조치를 거부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④ 제6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⑤ 이 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 또는 시·도지사가 부과·징수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